

※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

6. 기 타

◦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(☎ 02-2133-3658~9)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
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 변경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공고 제2008-800호(2009.1.2.)에 의하여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3호(2009.1.29.)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1호(2009.7.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, 종로구 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8.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(경미한 변경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31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
명 칭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지정목적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	167,844.4	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·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- 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 - 2)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 - 3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 - 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 - 5) 교통계획(변경없음)
 - 6) 경관계획(변경없음)
 - 7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구 분		구역명	면 적(㎡)	사업방식
총 계			167,844.4	
돈 의 문	촉진구역	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	152,198.6	도시환경 정비사업
		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	6,801.4	
		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	8,844.4	

- 8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없음)
- 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(변경없음)
- 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- 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변경)
- (1) 돈의문1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없음)
 - (2) 돈의문2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없음)
 - (3) 돈의문3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)

구 분		현 황(㎡)				사업구역 계획(㎡)					
명 칭		면적 (㎡)	계	대지	공공용지	계	사업시행 면적(㎡)	공공용지 부담계획(㎡)			공공용 지 부담율 (%)
								소계	기존	부담	
기정	돈의문3	8,844.4	8,844.4	7,282.1	1,562.3	8,844.4	6,400.8	2,443.6	1,562.3	881.3	12.10
변경	돈의문3	8,844.4	8,844.4	7,316.9	1,527.5	8,844.4	6,400.8	2,443.6	1,527.5	916.1	12.52

주1) 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고시(종로구고시 제2009-67호, 2009.10.23.)에서 단순한 착오에 따른 기존 공공용지 면적 기재사항 오기 정정을 위한 변경

- 12)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 13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해당없음)
 14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해당없음)
 15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해당없음)
 16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(변경없음)
 (1) 동의문1재정비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없음)
 (2) 동의문2재정비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없음)
 (3) 동의문3재정비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없음)
 가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 정	동의문3재정비촉진구역	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	8,844.4	

- 나) 정비계획(변경없음)
 (가)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 (나) 용도지역계획(변경없음)
 (다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 (라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해당없음)
 (마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없음)
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(해당없음)
 ② 건축시설계획(변경없음)

결정 구분	획지 구분	위치	면적(㎡)	건폐율 (%)	용적률(%)		연면적 (㎡)	높이 (m)	주용도	비고
					기준	상한				
기정	획지1	평동 222번지 일대	6,400.8	60 이하	600	850 이하	—주1)	110m 이하	판매/ 업무	—

주1) 연면적은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(제9444호, 2009.2.6.) 개정에 따라 삭제함

구 분	기 정
건축한계선 (변경없음)	◦ 의주로변 : 4m ◦ 이면도로 : 2m
벽면한계선 (변경없음)	◦ 1층 벽면한계선(공공보행통로) : 상업지역 중심 10m

- (바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 (사)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(변경없음)
 (아)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(변경없음)

- (자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- (차) 환경성검토결과(변경없음)
- (카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
5. 동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

6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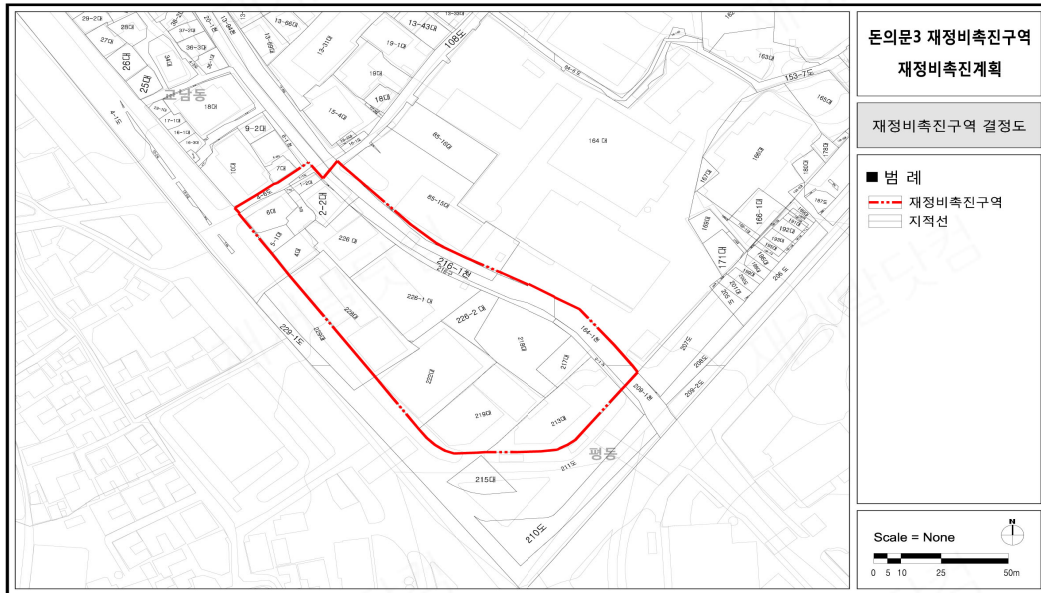
※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 02-2133-7218),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02-2148-269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7. 지형도면의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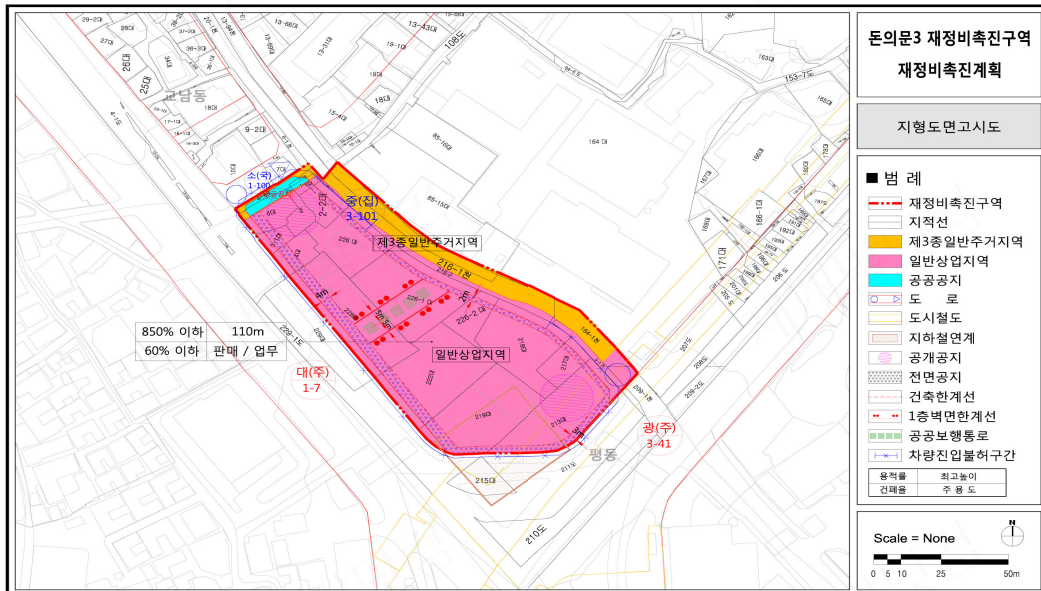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지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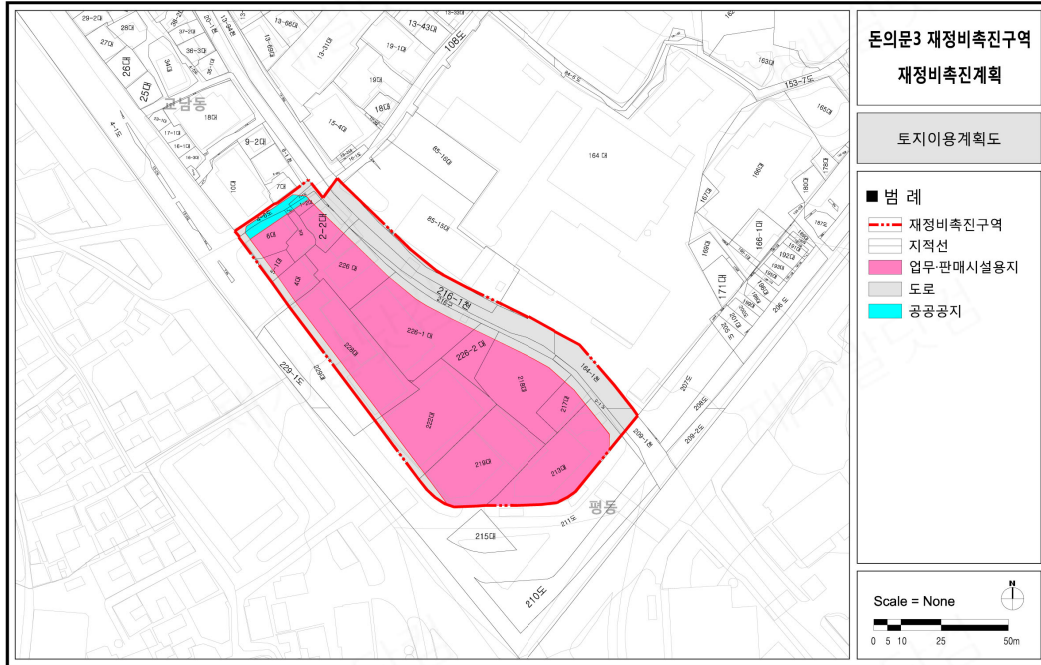
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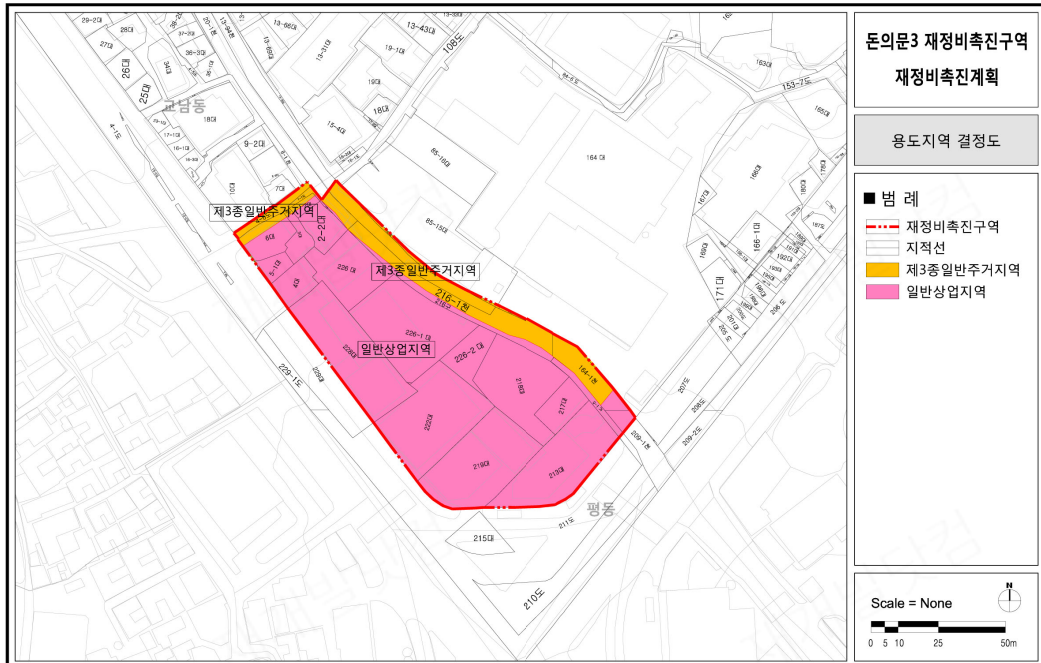
지형도면고시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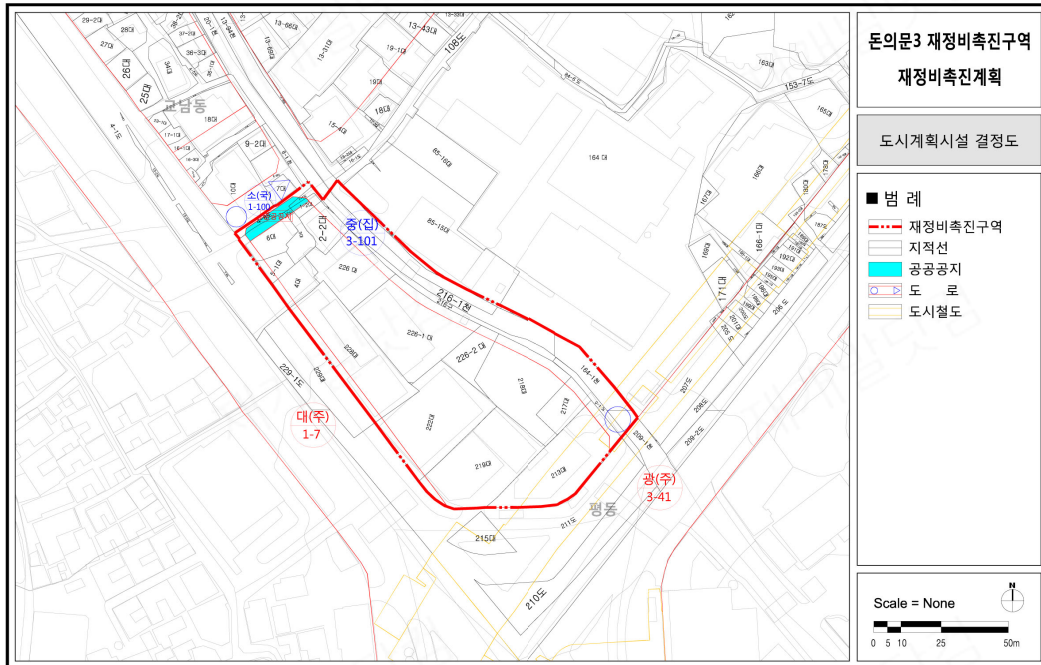
■ 토지이용계획도(변경없음)



■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
